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35
----------	-------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의자 : 이해식 · 강선우 · 이연희
김영진 · 한민수 · 박지원
윤준병 · 박상혁 · 홍기원
최혁진 · 최기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신 설>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